<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FTA센터) 공고 제2025-701호>

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(FDA-MoCRA 등록) 참여기업 모집공고 (긴급)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)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FDA-MoCRA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화장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8월 4일

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)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(FDA-MoCRA 등록)
- 지원항목 : 미국 FDA-MoCRA 등록 제반 비용 지원
- 지원대상
  -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(본점) 또는 공장 소재지가 **경기도**이고, **전년도 수출실적 2,000만불 이하인 기업**
  - 공고일 기준 MoCRA 등록 예정 및 진행 중인 기업
- 지원개사 : **33개사**

  * 필수서류 제출 완료 기업, FTA센터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기업
- 사업기간 : 선정일 ~ '25년 11월 말
- 지원내용 : 품목의 FDA-MoCRA 등록 제반 비용 지원 (최대 200만 원*)

  *** 총 소요 비용은 기업별·제품별로 상이하며, 기업은 총 소요 비용의 10%와 부가가치세(VAT) 부담**

FDA-MoCRA
현지 US Agent 지정, 성분 검토, 제품 시험, 시설 및 제품 등록비 등

※ 상기 계획은 경기도 및 주관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ㅇ 지원방식

- 미국 FDA-MoCRA 등록 제반 비용 **기업 자부담(선지출)**, 인증취득 후 인증 전체 비용 지출 증빙 서류* 제출하여 **사후 지원금 환급**

  * 지출 서류(용역 수행기관 입금내역) 및 인증 완료 증빙서류

※ 단, 선정 후 제품 성분 검사 진행 중 기업의 사정으로 인증취득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

ㅇ **참가 제한 및 사업 취소**

- 전년도(2024년) 수출 금액 2,000만불 초과
- 동일 품목 · 동일 인증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
- 지원 제한 업종 해당 기업
- 과거 경기FTA센터 사업이나 경기도 해외마케팅 참가 시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(예, 중도포기등)

2. 사업 진행 프로세스

① 사업 신청	② 신청 서류 검토 및 요건 적격성 확인	③ 참여기업 선정 개별 안내	④ 선정기업 인증취득	⑤ 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환급
참여기업	경기FTA 통상진흥센터	경기FTA 통상진흥센터	인증기관 기업 자율 선택	경기FTA 통상진흥센터

① **(사업 신청)** 신청서 및 필수 제출 서류 구비하여 담당자 이메일 신청

② **(신청 서류 검토 및 요건 적격성 확인)**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요건 적격성 서류 검토

③ **(참여기업 선정 개별 안내)** 적격성 확인 후 선정된 기업 개별 연락

④ **(선정기업 인증취득)** 참여기업은 자체적으로 인증기관 선택 후 인증 절차 진행

※ 기계약 수행기관인 KTR에서 인증취득을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[서식1]에 체크

⑤ **(서류 제출 및 지원금 환급)** **인증 전체 비용 지출 서류(용역 수행기관 입금 내역)와 인증 완료 증빙서류 제출** 후 검토하여 사후 지원금 환급

3. 신청 자격

ㅇ 공통 : 출시 완료된 제품(출시 전, 출시 예정 제품은 불가)

ㅇ FDA-MoCRA 등록 필수 자격: 제품 등록의 경우 제조사의 시설등록 정보 제공 가능자

4. 신청 및 평가

ㅇ 신청 기간 : 공고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※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ㅇ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

가. 신청 방법 : 선착순 이메일(kyh9563@gsmba.kr) 접수 및 신청

나. 필수 제출 서류

필수 제출 서류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공장등록증 사본 ※경기도 소재 ② (서식1) 참가신청서 ③ (서식2~4) 사업 신청 동의서, 정보활용 동의서,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 ④ 2024 수출실적증명서 (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) ※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

※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신청기업에서 제외

※ ④번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식은 하단 참조

1)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

- **회원사** : ① 온라인 :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(webdocu.kita.net)
  (www.kita.net → 회원사 →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)
  자사실적조회 : www.kita.net → 회원사 → 자사수출입실적조회
  ② 오프라인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)
- **비회원사**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)

2)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

* http://trass.kctdi.or.kr/service/pub/introService 방문
* 메인화면의 '자사수출입증명신청' 클릭
* 페이지 하단의 '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' 클릭
* 원하는 기간 설정 후 '조회'버튼 클릭
* '증명서주문'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

5. 기타

ㅇ 유의 사항

가.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,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[서식5]의 양식에 따라 **참가포기신청서**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

※ 지원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, 예산 범위 내 기간 연장 또는 추가모집 예정

나.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FTA센터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 제한 적용

-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
- 아래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<u>선정 후 7일 이후</u>에 대표의 직인·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
- 아래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·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

다. 참가제한기간 동안 <u>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경기FTA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</u>

* 단, 旣 선정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.

* 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

- 지원 제한 면제(예외)
  - 천재지변, 재난·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
  - 기업의 부도, 파산,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
  -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(공장 이전, 인명 사망사고, 기계파손, 원자재 수입 차질 등)

※ 포기기업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,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제한 적용

라.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)

마. 타 기관 지원 사업(해외인증)에 동일 품목에 대해 MoCRA 등록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※ 비용지원 후 타 기관 지원 사업(해외인증)과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조치하며, 1년간 지원 제한 적용. [서식4] 기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 제출 필수

바. 문의처 :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권윤희 주임보

☎031-995-7490, Email. kyh9563@gsmba.kr

※ 상기 계획은 경기도,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5년 8월 4일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FTA통상진흥센터)

서식1

「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」 (FDA-MoCRA 등록) 참가신청서

사업명		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(FDA-MoCRA 등록)					
업체 현황	업체명		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무역업 고유번호			
	대표자			상시 근로자 수			(명)
	업태	☐ 제조업 ☐ 비제조업		업종		화장품	
	제조사 (시설등록) 해당 여부	☐ 유 ☐ 무		주력 품목			
	인증 등록 진행 여부	☐ 인증 등록 준비 중(신규) ☐ 인증 등록 진행 중					
	희망 수행기관	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 ☐ 자체 선택(기관명:)					
	사업장 주소	본사 :					
		공장 :					
	담당자	성명		부서/직급			
		회사전화		FAX			
		휴대전화		E-mail			
	홈페이지						
	전년도 매출액	(백만원)		전년도 수출액		(천달러)	
거래 현황	수출 형태	☐ 직수출 ☐ 국내 공급(로컬수출) ☐ 기타(수출 예정)					
	수출 희망국			기 수출국			
	인증 등록 희망 품목	No.	품목명(국문)	품목명(영문)	용량	제형	필요인증
		1					
		2					
		3					
시험성적서 보유 여부		☐ 미생물 한도 시험성적서 ☐ 보존력 시험성적서 ☐ 안정성 시험성적서 ☐ 타 시험성적서(중금속, 향료 등) ☐ 알러지 시험성적서 ☐ 피부자극 시험성적서 ☐ 성적서 보유 사항 없음					
신청 목적							

상기와 같이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신청하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상기 내용은 참가기업 선정평가 시 활용되는 자료로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025년 월 일

업체명 :
대표자 : (인)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) 귀하

서식2

「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」 (FDA-MoCRA 등록) 신청 및 사업 진행 동의서

동의서는 성공적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됩니다.

_____(기업명 기재) 는 성공적인 『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(FDA-MoCRA 등록)』 진행을 위해,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

① 우리 회사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수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받을 것이며 최소 1인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지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담당자 변경 시 경기FTA센터에 사전 고지하며,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.

② 등록비, 시험비, 책임자 등록비, 부가세 등 해외인증 제반 전체 비용을 기업 자부담으로 선지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, 이를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, 인증등록(취득)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금이 환급됨에 동의합니다.

③ 인증 등록(취득)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참여를 권유하는 행사 및 교육(설명회)에 참석하겠습니다. 또한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, 언론 홍보,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.

④ 본 지원사업 관련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진행 중인 인증등록(취득)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,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주관하는 유사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당사의 대표는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) 귀하

서식3

「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」 (FDA-MoCRA 등록) 정보 활용 동의서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"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"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
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 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○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 보험자 수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○ 해당 지원사업 소관 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 기간

○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**5년간 수집**

*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※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 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기업명 :

대표자 :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서식4

「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」 (FDA-MoCRA 등록) 기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

기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

사업명	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(FDA-MoCRA 등록)		
기업명		대표자명	

당사는 2025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(FDA-MoCRA 등록)에 참여함에 있어,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동일 품목을 정부(국가 또는 지자체)의 기지원 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만일 기지원 및 중복지원이 확인 시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및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참여기업명 (직인)

대 표 자 (인)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) 귀하

서식5

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(FDA-MoCRA 등록) 포기 신청서

□ 참가 신청 내역

지원사업명	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(FDA-MoCRA 등록)		
회사명			
대표자 성명		사업자번호	
신청자 성명		전화번호	
e-mail		팩스 번호	
주소			
포기 사유			

당사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『2025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(FDA-MoCRA 등록)』 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,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.

아울러 참가 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수출지원 시책 참여 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대표자 (인)
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) 귀하